



제421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국 방 위 원 회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질병관리청장 포함〉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13호)

2025. 2.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미화의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 2024. 12. 2.
3. 회 부 일 : 2024. 1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의 침투·도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도록 하면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은 각 부의 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정보원장, 통합방위본부장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에서 오물풍선 등의 살포로 인한 생물테러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감염 위험성과 관련한 시의성 있는 현황 파악 및 대응 방안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을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방위에 있어서 감염병 분야에 대한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에 질병관리청장 포함

☐ 개정안은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으로 질병관리청장을 포함
시키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중앙 통합방위협의회) ① (생략)	제4조(중앙 통합방위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u>식품의약품안전처장</u> , 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② ----- ----- ----- ----- ----- ----- ----- ----- ----- ----- ----- ----- ----- ----- ----- ----- <u>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u>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4조¹⁾에서는 통합방위 정책, 통합방위작전·훈련 및 지침,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함)를 두고 있음.

□ 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19명의 각 부처 장관,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 국가정보원장, 통합방위본부장(합동참모의장), 차관급이나 국무회의 배석자인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 구성되고 각 부처 소속의 외청은 포함되지 않음.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구분		대상
의장		국무총리
위원	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

- 1) 「통합방위법」 제4조(중앙 통합방위협의회)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통합방위본부의 부분부장이 된다.
- ④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정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 및 그에 관한 지침
 3.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중앙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장관급	국무조정실장, 국가정보원장, 통합방위본부장
	차관급 (국무회의 배석)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 한편, 북한은 2024년 5월 28일부터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영토를 향하여 오물을 적재한 풍선을 무단으로 살포하고 있는데, 11월 말까지 총 32차례 7,000여 개의 오물·쓰레기풍선을 살포해 오고 있으며, 낙하한 내용물을 확인한 결과, 폐전선, 거름, 생활쓰레기(폐지, 담배꽂초 등), 분뇨, 중국산 폐건전지 등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와 쥐의 사체, 대남전단(빠라)이 식별되고 있음.

□ 이에 대해 국회는 국방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오물풍선을 통한 생물테러²⁾의 위협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중앙협의회 의 위원으로 질병관리청장을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오물풍선을 통해 발생가능한 독극물이나 바이러스 등 생물테러에 따른 현황 파악, 감염위험성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당하는 정부의 소관 부처가 포함되게 함으로써

2) 바이러스, 세균, 독소 등을 이용해 질병을 야기하거나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생물테러 안보체계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이 원활하고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 제8조제3항3)에서 통합방위본부는 통합방위 관계기관 간의 업무 협조 및 사업 집행상황의 협의·조정³⁾의 사무를 담당하는데, 생물테러 위협 발생시 질병관리청에 의한 업무 협조가 중앙협의회 위원인 보건복지부장관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루어져 신속한 업무협조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정부조직법상 질병관리청은 중앙협의회 위원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속⁴⁾으로, 현재 중앙협의회 위원에는 각 장관 소속의 외청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히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을 모두 중앙협의회 위원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성 및 효율성과 타 외청과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도 질병관리청장 등에 대해서는 「통합방위법」 제4조 제2항 및 관련 시행령에 중앙협의회에의 참석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필요시마다 중앙협의회에 참석⁵⁾하고 있어 개정안

3) 「통합방위법」 제8조(통합방위본부) ③ 통합방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 정책의 수립·조정
2.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감독
3. 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 분석 및 대비책의 수립
4. 통합방위작전, 훈련지침 및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5. 통합방위 관계기관 간의 업무 협조 및 사업 집행상황의 협의·조정

4) 「정부조직법」 제39조(보건복지부) ② 방역·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둔다.

의 실익은 크지 않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구분	내용
통합방위법 제4조제2항	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 이 된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5조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중앙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 <u>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협의회의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u>

□ 국방부(합참)는 개정안에 대해서 현행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은 모두 장관급 또는 국무회의 배석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하여 현재도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가 질병관리청장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바, 개정의 필요성이 낮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⁶⁾임.

□ 질병관리청장은 평시 및 상황 발생시 수행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임.

5) 질병관리청이 설립된 이후('20.9.)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참석하고 있음.

6) 실제로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해 경찰청장 등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5조제2호에 근거해 필요시 중앙통합방위협의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고 함.

문 의 처
02)6788-5308